

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		처리기간
		120일
교통신기술의 명칭	(교통신기술 제 호)	
신청인 (교통신기술 개발자)	법인명	법인등록번호
	성명 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 (우)	(전화:)
교통신기술의 범위		
교통신기술의 내용(요약)		
<p>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2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교통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국토교통부장관 귀하</p>		
첨부서류	1. 교통신기술의 명칭·범위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1부	납부 심사비용
	2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 기관이 발급한 활용 실적증명서 1부 3. 교통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 서류 1부 4. 그 밖에 보호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술한 서류 1부	1만원 (수입인지 첨부)

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쪽)

